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 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은 하나생명 하나원큐다이렉트보험(<http://1q.hanalife.co.kr>)에서 전자 청약을 통해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다른 채널의 정기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은 활동기의 사망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며 만기보험금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기간 동안 사망보장이 가능한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Q : 「보험료 납입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A :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은 보험료 할인이 되나요?

A : 3개월분 이상(당월분 포함)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비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Q :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장성보험
- 개인형
-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5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20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4.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2억원

5. 건강진단 여부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	(주계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Ⅳ.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사망률	
	남자	여자
20 세	0.000310	0.000180
40 세	0.000780	0.000470
60 세	0.004550	0.001730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Ⅴ.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Ⅵ.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나이 40세,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57,000	0	0.00%	27,000	0	0.00%
6개월	114,000	0	0.00%	54,000	0	0.00%
9개월	171,000	0	0.00%	81,000	0	0.00%
1년	228,000	0	0.00%	108,000	0	0.00%
3년	684,000	230,429	33.69%	324,000	74,286	22.93%
5년	1,140,000	460,714	40.41%	540,000	168,143	31.14%
7년	1,596,000	665,000	41.67%	756,000	247,000	32.67%
10년	2,280,000	826,000	36.23%	1,080,000	292,000	27.04%
20년	4,560,000	0	0.00%	2,160,000	0	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Ⅶ.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 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40세, 월납]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무배당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	20	20	94.4%	90.5%	10,000